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훈계 · 시정 요구

제 목 ○○천 유역 비점오염(非點汚染)저감시설 사업 준공 이후 방치 등

기 관 명 광주광역시

훈계대상자 ① 광주광역시 ○○○○과 지방○○○○○ ○○○

② 광주광역시 ○○○○본부 ○○○과 지방○○○○○ ○○○

③ 광주광역시 ○○○○본부 ○○○과 지방○○○○○ ○○○

내 용

○○○○과 지방○○○○○ ○○○은 2017. 1. 10.부터 2017. 9. 29.감사일 현재까지 비점오염 사업 계획수립 및 관리에 대한 총괄책임자로서 근무하고 있으며, ○○○○본부 지방○○○○ ○○○은 2017. 1. 10.부터 2017. 6. 30.까지 ○○○○본부에서 비점오염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준공한 업무총괄담당자로 근무하였으며, 설비 1과 지방○○○○○ ○○○은 2016. 8. 9.부터 2017. 7. 20.까지 비점오염시설 전기업무를 총괄책임자로서 근무하였으며, 설비 2과 지방○○○○○ ○○○은 2016. 1. 16.부터 2017. 9. 29.까지 비점오염시설 기계업무를 총괄책임자로 근무하였다.

광주광역시에서는 강우시 유출수와 함께 발생하는 초지의 동물배설물, 도로 등의 자동차 기름, 공사장의 흙탕물, 산지 농지의 비료성분 등 불특정 오염물

질을 처리하기 위하여 ○○천 유역 비점오염(非點汚染, Non-Point Pollution Source) 저감시설 설치사업을 2008. 5. 29.부터 2017. 5. 31.까지 615억원(저류조 461억원, 이송관로 154억원)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1. 관련 법령

가. 「국가재정법」 관련

「국가재정법」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거친 사업규모·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같은 법 제22조(타당성 재조사)에 따르면,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여 환경부를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협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상수도, 하수도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관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법인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

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를 하게 하여야 하고,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 검사 및 시험 등 세부적인 업무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건설사업관리 보고서의 작성·제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2015-473호)」을 준수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1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 등)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건설사업 관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건설사업 관리보고서에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의 내용을 빠뜨린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건설기술용역업자, 기술자 등이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건축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따른 부실측정 대상은 총용역비가 1억5천만원 이상인 건설기술용역,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인 건축공사,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 등에게 별점을 측정하여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건설공사 등의 별점관리기준(제87조제5항 관련)」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 등의 점검 시 지적된 내용과 제5호의 주요 부실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적된 내용과 유사한 부실내용의 별점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관련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7조(종합시운전 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운전 종합계획의 검토(계획서, 절차서, 성과물관리, 시설유지보수 계획 등), 시운전 조치사항의 검토 및 결과처리 방안(현장점검, 개별시운전, 계통연동시험, 시험운영 단계), 시운전관련 회의 및 보고, 시운전 결과보고서 작성(운영상태 점검, 재시행계획, 시설개선사항, 보완대책 및 조치결과 등) 등 시운전 계획을 검토하고, 시운전 상태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지침 제12조 및 110조에 따라 시공사와 건설사업 관리업체에서는 준공검사 시정 완료일부터 14일 이내 시설물 인수·인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지침 제53조(하도급 적정성 검토)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발주청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규정을 이행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하며, 그 의견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지침 제105조(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관계자간 업무조정회의 운영 실시, 공사 시행단계별 간섭사항 내용파악을 위한 사전 검토 등 같은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련

「지방계약법」 제6조(계약의 원칙)에 따르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 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기준 제9절. 1. 가.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건설 사업관리용역업자도 같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기준 제9절. 6.(준공 대가의 지급)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준공 대가 지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수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기준 제9절 “4”와 “6”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의 시공·제작·대여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을 하수급인과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하수급인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확인하여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하고,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대가 지급내역을 제9절 “4-나” 또는 “6-마”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계약담당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바. 「전력기술관리법」 관련

「전력기술관리법」 제10조(기술기준의 준수)에 따르면, 같은 법 제11조 제1

항 및 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자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 감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감리원의 업무 범위)에 따르면,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 범위는 공사계획의 검토, 공정표의 검토, 발주자·공사업자 및 제조자가 작성한 시공설계도서의 검토·확인 등을 업무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사.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관련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43조(공정관리)에 따르면, 감리원은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설계설명서, 도면 등에 따라 우수한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의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있어서 공정진척도 관리와 기성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리하여야 하고,

같은 지침 제45조(부진공정 만회대책)에 따라 감리원은 공사 진도율이 계획공정 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 이상 지연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 이상 지연될 때에는 공사업자에게 부진사유 분석,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지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 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평가하여야 하며,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 등을 수립하여 정상 공정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지침 제52조(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에 따라 감리원은 설계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업무 흐름을 참조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리원은 시공과정에서 당초 설계의 기본적인 사항인 전압, 변압기 용량, 공급방식, 접지방식, 계통보호, 간선규격, 시설물의 구조, 평면 및 공법 등의 변경 없이 현지 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증감이나 단순 시설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증감공사 내역을 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확인하고 우선 변경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사후에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지침 제63조(시설물 인수·인계)에 따르면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해당 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 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따른 기성부분 포함) 완료 후 14일 이내에 운영지침서, 시운전 결과 등에 대해 시설물의 인수·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하며,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를 제출받아 7일 이내에 검토·확정하여 발주자 및 공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자와 공사업자 간 시설물 인수·인계의 입회자가 되어야 한다.

또한, 감리원은 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한 발주자 등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상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공사업자가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를 하고, 인수·인계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인수·인계는 준공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0조(벌칙)에 따라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 동 공사의 시방서 관련

동 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 392page에 따르면, 종합시운전은 강우 패턴을 고려한 누적 유출고를 설계기준강우가 9.43mm에 유출계수 0.53을 적용하여 5mm일 때 시운전을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동 공사의 시방서(2015. 8.변경) III기계분야 14page에 따르면 관 재질은 공기배관 중 수중에 설치 할 경우 STS304로 시공하고 매설 또는 실내노출될 경우에는 Carbon Steel(Garv.)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으며,

16~19page에 따르면, 공기배관 설치에 따라 사용되는 플랜지 및 볼트와 너트는 SS 400 1종(KS D 3503) + 용융아연도금제, STS 304(KSD 3706)로 사용하고 외관검사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위법·부당 행위 관련

가. 타당성 재조사 등 총사업비 미 협의

광주광역시(○○○○○○과)에서는 총 사업비가 사업추진과정에서 기본계

획이나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되어 500억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고, 환경부를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과 총사업비 협의를 하여야 했다.

위 관서(○○○○○○과)에서는 하수도관련 특별회계 운영 및 예산편성, 지방채와 기채, 하천 등의 오염방지에 관한사항을 총괄하면서 ○○천 유역 비점오염을 집중관리하기 위하여 2009년 세입·세출예산서에 총사업비를 453억원(401-01 시설 및 부대비, 17억 원, 592~593page)으로 추정하였으며,

단일예산으로 시행·기본계획 수립 용역,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수립하고, 2009. 2. 17.부터 2009. 4. 8.까지 (주)○○○○공사 등과 계약 체결하여 저류조와 이송관로 등을 포함하여 시행·기본계획 설계를 실시하였다.

그 후 2011. 2. 22.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통해 환경부에 총사업비 증액 승인 신청하였으나, 환경부에서는 500억원 이상으로 사업비 과다, 처리효율 등을 이유로 ○○천 비점오염 시설의 총 530억원 중 저류조 부분(413억 원, 60,000m³)은 금회 실시하고, 이송관로 부분은(117억 원, L=2,546m) ○○천 유역내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가 완료된 이후 별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 통보하였다.

그러나 위 관서(○○○○과 : 舊 ○○○○○○○과)에서는 2014. 1. 2. ‘2008년도 하수관거 BTL 사업’을 추진하면서 초기우수를 저류할 이송관로 사업추진을 목적으로 환경부의 “○○천 유역내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가 완료된 이후에 이송관로 부분은(117억 원, L=2,546m) 별도로 추진”하는 조건을 무시하였는 바, ○○천 13분구(○○동, ○○동 일원) 지역 등에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70%('15년도 기준 85%) 정도만 완료되어 지연되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위 관서 ○○○○본부에 이송관로(117억 원, L=2,546m)사업 추진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총사업비가 530억원(당초 저류조 413억원, 추가 이송관로 117억원)으로 증가된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고 환경부를 거쳐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하여야 함에도, 동 사업은 경제성도 나오지 않고 사업협의 기간이 길어진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타당성 재조사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하지 않았다.

이송관로부분의 우수 토실 문제로 준공된 지 4개월이 지난 감사일 현재(2017. 9. 30.)까지 초기우수 및 하수가 전혀 유입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어, 이는 당초 사업계획을 부적절하게 수립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나. 시운전 부적정 등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운전 종합계획의 검토(계획서, 절차서, 성과물관리, 시설유지보수 계획 등), 시운전 조치사항의 검토 및 결과처리 방안(현장점검, 개별시운전, 계통연동시험, 시험운영 단계), 시운전관련 회의 및 보고, 시운전 결과보고서 작성(운영상태 점검, 재시행계획, 시설개선사항, 보완대책 및 조치결과 등) 등 시운전 계획을 검토하고, 시운전 상태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에 종합시운전은 강우패턴을 고려한 누적유출고를 설계기준 강우가 9.43mm에 유출계수 0.53을 적용하여 5mm일 때 시운전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하여 동 공사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단계별로 기계, 전기, 계장설비의 설치 및 검사를 위해 1단계로 단독 무부하 시운전(2017. 3. 1.부터 3. 30.까지) 실시하고, 기기, 전기, 계장 배관 등 성능검사를 실시하는 2단계 부하 시운전

(2017. 4. 1.부터 5. 31.까지)을 구분하여 실시 후 미비사항을 있을 경우 보완하여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위 관서(○○○○본부)에 제출하였다.

이후 위 관서(○○○○본부)에서는 2017. 2. 13. ○○천 유역 비점오염 저감 시설을 설계 목적에 적합하도록 종합 시운전하는 세부계획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승인 통보하였다.

그런데 위 관서(○○○○본부)에서는 2017. 4. 1부터 5. 31.까지 2단계 초기우수에 대한 시운전을 동 지방서 규정에 의거 강수량 9.43mm이상 누적강도가 아래 [표1]과 같이 초기우수가 5회 발생 할 경우 차집관로 유입을 시켜 성실하게 시운전을 하여야 함에도,

2017. 4. 5.부터 5. 9.까지 전기와 기계분야에서 연동 테스트 시 계장설비 등 제어계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차집관로 확인한 결과 우수 토실에 문제가 발생하여 초기우수가 유입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성실하게 개선하지 않고 준공기한(2017. 5. 31.)인 6일 전인 2017. 5. 24.에 기계분야 시운전을 초기우수 2회를 하수 2회 변경하여 실시하였다.

[표1] : ○○천 비점오염 시운전 기간 누적 강수량 현황

구분	4월			5월		초기우수 차집량	비고
	5일	11일	17일	5일	9일		
누적강우(mm/일)	25.9	11.0	10.7	10.2	11.8	4월21일: 1,063㎥ 5월 9일: 500㎥	
강우월유량(㎥)	없음	없음	없음	없음	500		

그 결과 당초 초기우수를 차집하여 오염원을 제거하겠다는 비점오염의 목적을 상실하고 하수만 시운전한 사실이 있으며, 우수 토실 문제로 준공이후 4개월이 지난 감사일(2017. 9. 30.)까지 하수 또한 전혀 유입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

는 사실이 있다.

더구나 시운전 시 제기된 우수 토실에 등에 대한 문제점을 총괄부서(토목)에서 20회 정도 대책회의를 실시하였으나, 광주광역시 ○○○○과, ○○○○본부(○○○과, ○○○과) 등 각각의 부서 이기주의로 자기 문제점이 아니라고 주장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계약자간 또는 공사관계자간 업무조정회의 운영 실시, 종합 시운전 시행단계별 간섭사항 내용과약을 위한 사전 검토 등 시공 인터페이스 조정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2017. 4. 1.부터 2017. 4. 25.까지 중앙 컨트롤 박스 모니터(HMI)를 계약업체와 기계 및 전기분야 등의 업무를 조정하지 못하여 25일간 시운전 못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본부)에서는 시운전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음으로서 준공 후 4개월째 시설의 문제점 등을 찾지 못하고 부서이기주의로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제시 못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다. 시공 및 준공검사 부적정

위 관서에서는 동 공사의 지방서 따라 배관이 실내 노출될 경우에는 Carbon Steel(Garv.)로 시공하고, 공기배관 설치에 따라 사용되는 볼트와 너트는 SS 400 1종(KS D 3503) + 용융아연도금제, STS 304(KSD 3706)로 시공하여야 했다.

그런데 동 사업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광주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2017. 4. 13. 1차 시운전기간(2017. 4. 27.)에 59건의 개선요청과 2017. 6. 7. 2차 시운전기간(2017. 5. 15.)에 48건의 개선요청에 대하여 시운전 시 발견된 문제점 등이

완벽하게 완료된 경우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함에도, 시운전 시 발견된 문제점 (방수 구조물의 누수 등)에 대해 개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준공된 것으로 보고하고 감사일 현재(2017. 8. 31.)까지도 [표 2]와 같이 미 조치 된 사실이 있다.

[표2] 시운전시 개선요구사항 미조치 현황(2017. 6. 9. 기준)

구분	계	설계대로 시공되었으나 유지관리상 필요사항 요청	마감불량 등 조치요청	시공중인 사항에 대하여 주의 등 의견제시	최종 설계완료 후 내역에 없으나 필요사항 요청
개선요구	107건	45건	31건	20건	11건
미조치 사항	5건	-	4건	-	1건

또한 ○○동 공기배관에 사용되는 플랜지 및 볼트와 너트는 SS 400 1종 (KS D 3503) + 용융아연도금제, STS 304(KSD 3706)로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함에도 적정재질의 자재를 사용하지 않아 플랜지 및 볼트와 너트에서 준공된지 3개월 만에 도금탈락과 녹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공검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시운전 시 개선요구 사항이 5건이나 미조치 되고 있고, 시설물에 녹이 쏘고 도금이 탈락하여 정상적으로 시설이 운영도 못한 채 노후화가 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라. 준공된 비점오염 저감 시설 미 인계·인수 지연 등

위 관서 ○○○○과에서는 동 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의 인력 충원, 예산 등을 확보하여 시설물 인수·인계를 하여야 하고, ○○○○본부에서는 동 시설물에 대해 시운전 등을 통한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동 사업을 준공(2017. 5. 31.)한 후 ○○○○과로 인수·인계를 하여야 했다.

또한 동 사업의 사업담당자와 건설설사업관리기술자는 검사를 완료한때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하며 통지를 완료한 후에는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해야 하며,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라 전기공사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를 제출받아 7일 이내에 검토·확정하여 발주자 및 공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했다.

또한 시공사와 건설사업 관리업체에서는 준공검사 시정 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시설물 인수·인계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관서(○○○○과, ○○○○본부)에서는 업무 갈등에 따라 업무조정 등을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실무 담당자들만 회의를 통하여 인수·인계 협의를 하였으나, 준공 이후 4개월이 지난 감사일(2017. 9. 30.)까지도 인수·인계(안)을 찾지 못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위 관서(○○○○과, ○○○○본부)에서는 준공검사 전에 따른 ○○○○○○의 인력수급계획(○○○○○○요청: 8명, 감리단 검토: 10명)에 대한 조치하고 인수·인계를 하지 않음으로써 시설물이 4개월째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마. 전기공사 공정관리 소홀 등 민원 처리 부적정

1) 전기공사 공정관리 소홀 등

전기공사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라 설계도서 및 기술기준 등 예정공정표에 적합하도록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 진도율이 계획공정 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 이상 지연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 이상 지연될 때에는 공사업자에게 부진사유 분석,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지시하여 조치하여야 하고, 수량증감이나 단순 시설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증감공사 내역을 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확인하고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위 관서(○○○○본부)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관계자간 업무 조정회의 운영 실시, 공사 시행단계별 간섭사항 내용과약을 위한 사전 검토 등 같은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업무를 수행하여야 했다.

위 관서(○○○○본부 ○○○과)에서는 2016. 6. 30. 한전과 전력수급에 대해 장기간 협의(2015. 4. 27.~2016. 4. 12.) 및 전기공사 설계변경 작성지연 등으로 토목·기계 용역을 2016. 7. 1.부터 2016. 8. 29. (60일간) 일시 중지하였다.

[표3] ○○천 비점오염 일시 중지 현황(2016. 7. 1. 기준)

구분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공정율	비고
공사	토목기계	24,492,732	11.12.21.~16.8.31.	(주)○○○○ ○○○ 외 4	96%	금회정지
	전기	1,552,690	12.10.4.~16.8.31.	(주)○○○○ ○○○	4.5%	
	통신	7,318	12.10.4.~16.8.31.	(유)○○○○○ ○○○	5%	
용역	감리	2,223,327	11.12.19.~16.8.31.	(주)○○○○○○○ ○○○○ 외 2	93%	배치조정
	폐기물	60,742	11.11.22.~16.8.31.	(주)○○환경 ○○○	83.5%	금회정지
	cctv	6,910	12.12.3.~16.8.31.	(주)○○○○○ ○○○	10%	금회정지

그런데 위 관서(○○○○본부)에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하여금 2016. 7. 1.까지 전기공사가 예정공정표상 59.4%여야 함에도, 공정관리와 인터페이스 조정 등 공사 건설사업관리를 부적절하게 하여 4.5%로 미달된 사실이 있다.

또한 협의 및 전기공사 설계변경 작성지연 등으로 토목, 기계 용역을 2016. 7. 1.부터 2016. 8. 29.까지(60일간) 일시 중지 할 경우 그에 따라 감리원(전기)만 배치토록 조정하여야 함에도, 공사 일시정지 기간에도 공정이 다른 토목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하고 그에 따른 투입비용 52,554천원[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자(토목): 32,693천원, 보조감리원(전기): 19,861천원] 상당(2개월)을 반영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본부)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감리원 배치 등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52,554천원 상당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전기공사 민원 처리 부적정

(주)○○○○ 현장대리인은 전기공사 감리원(○○○)에게 유입펌프장 동력설비 시설의 조인트 박스설치 필요성을 2016. 9. 8. 구두 보고 후, 전기공사 감리원

의 선 시공하라는 승인을 득하고 2016. 9. 9. 조인트 박스를 3개소를 설치하였다.

그 후 건설사업감리단으로부터 유입펌프장 고압유입펌프(기계설치분)에 대하여 2017. 2. 10. 실정보고(○○○-2017-○○호)지시를 받고 (주) ○○○○ 현장 대리인은 고압단자함 등 도금액 9,272천원을 실정보고 하였다.

전기공사 감리원은 유입펌프장 동력설비 시설의 조인트 박스 선시공분에 대해서 ○○○○본부에 2017. 5. 22. 보고하였으나, ○○○○본부에서는 감리원에게 구두승인 받아 설치한 고압단자함을 반영할 수 없다고 2017. 5. 29. 감리단에 통보하였다.

그 후 (주)○○○○에서는 건설사업감리단에서 사용검사전 선시공하라는 구두지시를 받고 설치를 하였으며 실정보고 사항을 미 반영시 조인트 박스를 철거해 가겠다고 2017. 8. 4. 민원을 제기하였고,

위 관서(○○○○본부 ○○○과)에서는 조인트 박스 없이 직결로 연결하여도 아무런 하자가 없어 반영 할 수 없으며, 기시공된 고압단자함인 조인트박스는 철거할 수 없고, 비용도 지급할 수 없다고 2017. 8. 23. 회신한 바 있다.

위와 같이 위 관서(○○○○본부 ○○○과)와 건설사업관리단에서는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됨에도, 고압단자함인 조인트 박스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하고, 설치비용도 반영하지 않고 “갑”이라는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실정보고 사항을 부적절하게 검토하여 민원을 처리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본부 ○○○과)에서는 실정보고와 민원처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음으로서 계약상대자의 부당한 이익을 침해하고, 행정에 신뢰

를 실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바. 기계공사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동 설치사업의 기계공사(22.9KV, 4000KW, 간선설비, 동력설비, 계측설비 등)를 '12. 10. 4.부터 '17. 5. 31.까지 (주)○○○○○(대표 ○○○)와 하도급을 계약 (2,046백만원)하여 추진하였다.

위 관서(○○○○본부 ○○○과)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및 제30조(벌칙)에 따라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보증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했고, 하도급 대금은 준공금 지급 후 15일 이내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 지급을 확인하여야 하고, 위반할 경우 하도급 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야 했다.

그런데 위 관서(○○○○본부 ○○○과)에서는 2017. 5. 31.공사 준공 후 감사일 현재까지(2017. 9. 30.) 하도급사인 (주)○○○○○에게 19백만원 상당을 미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금지급을 확인하고 위반할 경우 2배이상 상당에 벌금 또는 시정명령 조치를 조치하여야 함에도,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의 정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유로 하도급 지급 확인도 없이 해당업무를 방치하고 있다.

따라서 하도급사는 대금이 체불됨으로서 근로자 임금지연 지불 또는 일부 체불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광주광역시장은

[훈계] 위 관련자들을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① 기계공사 하도급 대금 19백만원 미지급, 공사 중지에 따른 감리원 배치 미조정 및 과다 감리비 52,554천원 상당 반영에 대해서는 벌칙과 회수 등 관련법령을 검토하여 적의 조치하고,

② 준공 후 4개월째 방치되어 있는 비점오염 저감시설에 대해서는 기계장비 미사용으로 고장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과 협의하여 인수·인계를 하고,

③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사에 5회 누적강우 발생시 시운전 부적정, 볼트 및 너트에 대한 시공불량, 인수인계서 보고 지연, 전기공사 설계변경 지연 및 민원처리 부적정, 공사 중지에 따른 감리원 배치 미조정 및 과다 감리비 52,554천원 반영, 준공검사 부적정, 기계공사 하도급 대금 미지불 등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건설사업관리업체, 시공사 등에 대해 영업정지 및 부실벌점 부과 등을 검토하여 적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비점오염처리 시설사업 및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계획이 서로 달라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 수립을 통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바랍니다.